

# 의왕 백운프로젝트 금융투자(주)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 공고 제2024 - 03호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 공개

의왕 백운프로젝트 금융투자(주)에서 발주 및 인·허가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 점검 수행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건설공사[토목·건축·종합]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01. 30.(화) ~ 2024. 02. 06.(화)

나. 평가기준 적용기간 : 공고일로부터 계속

다. 문 의: 의왕 백운프로젝트 금융투자(주) 건설팀(031-689-4068)

2024. 01. 30.

의왕 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 1. 평가기준

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 18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에 한한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받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미달 시 실격으로 처리한다.

- 사업 책임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OO직무 (전문) 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OO직무(전문)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 분야별 참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OO직무 (전문) 분야의 건설기술자

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한 수행기관이 1개소일 경우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며, 2개소 이상인 경우 아래에 따라 심사한 점수가 최고점인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구 분	심사항목		심사방법
안전점검비 1억원 미만	수행능력	-	
	입찰가격	100점	○ 경쟁입찰 최저가 업체 선정
	합 계	100점	

<p>안전점검비 1억원 이상 (적격통과점수 95점 이상) (낙찰하한율 86.745%)</p>	수행능력	50점	<p>평점 = <math>\frac{\text{적격심사 점수}}{100} \times 50\text{점}</math></p> <p>○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p>
	입찰가격	50점	<p>○ 평점 = <math>50 - 2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math></p> <p>○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p> <p>○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p>
	합 계	100	○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 지정

다. 평가결과 최고점이 2개소 이상인 경우 입찰가격이 낮은 기관을 지정하며,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라.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제12항 및 제14항에 따라 지정결정 취소되었거나,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체결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 2.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각 평가기준에 따른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업수행능력 등 해당 평가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제출서류는 지정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으로 함.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포함된 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을 포함한다.)은 반드시 당해 안전점검에 참여하여야 하며,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안전점검에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왕 백운프로젝트(주)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 [붙임 1]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 1. 총괄

가. 적격심사 점수 : 100점

나. 적격여부 :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가 0점에 해당되는 경우 실격 처리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배점기준 총괄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가] 참여기술인	책임기술인 (25)	등급	-
		경력	12
		실적(건수)	7
		실적(금액)	6
	분야별책임기술인 (20)	등급	3
		경력	7
		실적(건수)	5
		실적(금액)	5
<b>【소계】</b>			<b>【45점】</b>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의 유사용역실적	건수	12
		금액	13
	<b>【소계】</b>		
[다] 신용도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시정 (-0.3점), 부실 (-0.7점)	4
	업무정지	업무정지 (30일 마다 -0.2점)	3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b>【소계】</b>		
[라] 업무 중첩도	책임기술자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12
	분야별책임기술자		8
	<b>【소계】</b>		
<b>【총계】</b>			<b>【100점】</b>

## 2. 세부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		[45]												
	(1) 사업책임기술인	(25)												
	(가)등급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나)경력	12	<table border="1"> <tr> <td>7년이상</td> <td>7년미만 ~6년이상</td> <td>6년미만 ~5년이상</td> <td>5년미만 ~4년이상</td> <td>4년미만</td> </tr> <tr> <td>12</td> <td>10.8</td> <td>9.6</td> <td>8.4</td> <td>7.2</td> </tr> </table>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12	10.8	9.6	8.4	7.2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12	10.8	9.6	8.4	7.2									
	(다)실적 [최근7년]	건수	7	<table border="1"> <tr> <td>14건이상</td> <td>14건미만 ~12건이상</td> <td>12건미만 ~10건이상</td> <td>10건미만 ~8건이상</td> <td>8건미만</td> </tr> <tr> <td>7</td> <td>6.3</td> <td>5.6</td> <td>4.9</td> <td>4.2</td> </tr> </table>	14건이상	14건미만 ~12건이상	12건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7	6.3	5.6	4.9	4.2
		14건이상	14건미만 ~12건이상	12건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7	6.3	5.6	4.9	4.2									
	금액	6	<table border="1"> <tr> <td>8억이상</td> <td>8억미만 ~7억이상</td> <td>7억미만 ~6억이상</td> <td>6억미만 ~5억이상</td> <td>5억미만</td> </tr> <tr> <td>6</td> <td>5.4</td> <td>4.8</td> <td>4.2</td> <td>3.6</td> </tr> </table>	8억이상	8억미만 ~7억이상	7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6	5.4	4.8	4.2	3.6	
	8억이상	8억미만 ~7억이상	7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6	5.4	4.8	4.2	3.6									
(2) 분야별 책임기술인	(20)													
(가)등급	3	<table border="1"> <tr> <td>특급기술자</td> <td>고급기술자</td> <td>중급기술자</td> </tr> <tr> <td>3</td> <td>2.5</td> <td>2</td> </tr> </table>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3	2.5	2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3	2.5	2												
(나)경력	7	<table border="1"> <tr> <td>6년이상</td> <td>6년미만 ~5년이상</td> <td>5년미만 ~4년이상</td> <td>3년미만 ~2년이상</td> <td>2년미만</td> </tr> <tr> <td>7</td> <td>6.3</td> <td>5.6</td> <td>4.9</td> <td>4.2</td> </tr> </table>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7	6.3	5.6	4.9	4.2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7	6.3	5.6	4.9	4.2										
(다)실적 [최근7년]	건수	5	<table border="1"> <tr> <td>11건이상</td> <td>11건미만 ~9건이상</td> <td>9건미만 ~7건이상</td> <td>7건미만 ~5건이상</td> <td>5건미만</td> </tr> <tr> <td>5.0</td> <td>4.5</td> <td>4.0</td> <td>3.5</td> <td>3.0</td> </tr> </table>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5.0	4.5	4.0	3.5	3.0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5.0	4.5	4.0	3.5	3.0										
금액	5	<table border="1"> <tr> <td>5억이상</td> <td>5억미만 ~4.5억이상</td> <td>4.5억미만 ~4억이상</td> <td>4억미만 ~3.5억이상</td> <td>3.5억미만</td> </tr> <tr> <td>5.0</td> <td>4.5</td> <td>4.0</td> <td>3.5</td> <td>3.0</td> </tr> </table>	5억이상	5억미만 ~4.5억이상	4.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5억이상	3.5억미만	5.0	4.5	4.0	3.5	3.0		
5억이상	5억미만 ~4.5억이상	4.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5억이상	3.5억미만										
5.0	4.5	4.0	3.5	3.0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25]																																		
	(1) 건수 [최근5년]	(12)	<table border="1"> <tr> <td>6건이상</td> <td>5건</td> <td>4건</td> <td>3건</td> <td>3건미만</td> <td colspan="2"></td> </tr> <tr> <td>12.0</td> <td>10.8</td> <td>9.6</td> <td>8.4</td> <td>7.2</td> <td colspan="2"></td> </tr> </table>						6건이상	5건	4건	3건	3건미만			12.0	10.8	9.6	8.4	7.2																
6건이상	5건	4건	3건	3건미만																																
12.0	10.8	9.6	8.4	7.2																																
	(2) 금액 [최근5년]	(13)	<table border="1"> <tr> <td>5억이상</td> <td>5억미만 ~4억이상</td> <td>4억미만 ~3억이상</td> <td>3억미만 ~2억이상</td> <td>2억미만</td> <td colspan="2"></td> </tr> <tr> <td>13.0</td> <td>11.7</td> <td>10.4</td> <td>9.1</td> <td>7.8</td> <td colspan="2"></td> </tr> </table>						5억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13.0	11.7	10.4	9.1	7.8																
5억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13.0	11.7	10.4	9.1	7.8																																
다. 신용도		[10]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2) 업무정지	(3)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 (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																																	
	(3) 재정상태 건설도	(3)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table border="1"> <tr> <td>회 사 채</td> <td>A-이상</td> <td>A-미만 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 이하</td> <td colspan="2">미제출</td> </tr> <tr> <td>기업어음</td> <td>A2-이상</td> <td>A2-미만 A3-이상</td> <td>A3-미만 B-이상</td> <td>C이하</td> <td colspan="2">미제출</td> </tr> <tr> <td>기업신용</td> <td>A-이상</td> <td>A-미만 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 이하</td> <td colspan="2">미제출</td> </tr> <tr> <td>점 수</td> <td>3.0</td> <td>2.7</td> <td>2.4</td> <td>2.1</td> <td colspan="2">0</td> </tr> </table>						회 사 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3.0	2.7	2.4	2.1	0	
회 사 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3.0	2.7	2.4	2.1	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업무 중첩도	(1) 사업 책임기술인	[20]						
		(12)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4건이하	5건	6건	7건	8건이상
			점수	12.0	10.8	9.6	8.4	7.2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용역 및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용역 건수 적용								
	(2) 분야별 책임 기술인	(8)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구분	4건이하	5건	6건	7건	8건이상	
		점수	8	7.2	6.4	5.6	4.8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용역 및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용역 건수 적용						

## 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 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 상대평가지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 3. 용어의 정의

가. 해당 전문 분야 : ○○직무(전문)분야

나.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 : ○○직무(전문)분야, ○○직무(전문)분야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 실적은 해당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경력 및 실적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 전문분야 외 용역실적 인정은 최대 8건(14건×60%=8.4)으로 한다.

- 예1) 전문분야 용역 5건, 전문분야 외 용역 4건

· 실적건수: 전문분야 용역 5건 + 전문분야 외 용역 2건(4건×60%=2.4) = 7건.

⇒ 평가점수 4.2점

- 예2) 전문분야 용역 5건, 전문분야 외 용역 10건
  - 실적건수: 전문분야 용역 5건 + 전문분야 외 용역 6건( $10 \times 60\% = 6$ ) = 11건.
  - ⇒ 평가점수 5.6점
- 예3) 전문분야 용역 5건, 전문분야 외 용역 15건
  - 실적건수: 전문분야 용역 5건 + 전문분야 외 용역 8건( $15 \times 60\% = 9 \Rightarrow$  최대 8건인정) = 13건.
  - ⇒ 평가점수 6.3점

#### 4.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 가. 자격 및 등급 평가기준

- 1) 사업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전문)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직무(전문)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야 한다.
- 2) 분야별책임기술인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 3)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에 대하여 평가하며,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는 ○○분야이어야 한다.

#####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기준

-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등 지정공고일 이전에 준공한 용역과, 준공 예정 용역 중 기성 검사를 완료한 용역에 대하여 평가한다.
-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3.용어의 정의’ 기준에 따라 해당전문분야(○○)의의 분야에서 경력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경력)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 3)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365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경력 년수 계산 시 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

#####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기준

-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수행한 실적에 한하며, 용역규모를 준공금 5백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함
- 2)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3.용어의 정의’ 기준에 따라 해당전문분야(○○)의의 분야에서 용역 실적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 라. 참여건설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한다

- 실적은 준공금 5백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함.

- 마.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 바.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한다.

## 5. 유사용역 수행실적

-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며,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 발주자 및 시공사 확인 : 실적증명서, 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 수행중인 용역 : 용역계약서 및 기성세금계산서
- 유사용역은 최근 5년 이내 수행실적 인정
- 용역규모는 준공금 5백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함
- 유사용역은 수행실적은 ‘3.용어의 정의’ 기준에 따라 해당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용역 실적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 다. 실적증명서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으로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 6. 신용도

-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 1)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른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말한다.
  - 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 나. 업무정지
  - 1) 수행기관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지정공고일 기준)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한다.
  - 2)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한다.

#### 다. 재정상태 건설도

-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 점으로 처리한다.

### 7. 업무중첩도

- 가.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 중 「건설기술 진흥법」 62조에 따른 정기점검, 정밀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용역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나.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되는 용역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다. 업무중첩도는 참여 중인 모든 전문분야(해당분야 외 타 전문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 라. 최종 선정된 업체의 업무중첩도는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 홈페이지에 7일간 공개하여 평가 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받아 평가에 반영한다.

## II. 그 밖의 사항

1.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시공사의 확인, 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유사용역 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는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4.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의 기간계산 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1년을 365일로,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7.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는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8.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9.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 공사명	의일로2 도로확장공사		
2. 시공사	(주)개성토건		
3. 발주자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주)동일기술공사		
5. 공사개요			
공사비	10,999,000,000원	공사기간	2023.07.04.~2025.03.03
현장주소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일원		
공사내용	의일로2 도로확장 : L=860m, B=20.0m(4차로)		
6. 안전점검 신청 개요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정밀안전점검[ <input type="checkbox"/> ] 초기점검[ <input checked="" type="checkbox"/>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input type="checkbox"/> ]		
안전점검 내용	판넬식옹벽(H5m이상, L=153.75m)		
안전점검 비용	42,000,000(예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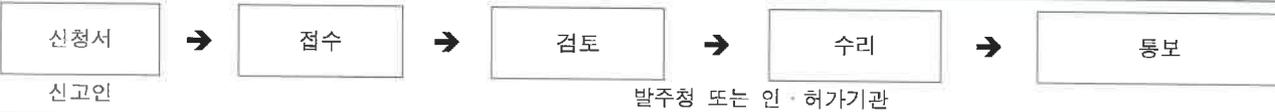
2024 년 01월 25일

신고인 (주) 개성토건 (서명 또는 인)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 귀하

첨부서류	안전관리계획서 중 안전점검비 산출내역	수수료	없음
------	----------------------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 판넬식옹벽 전개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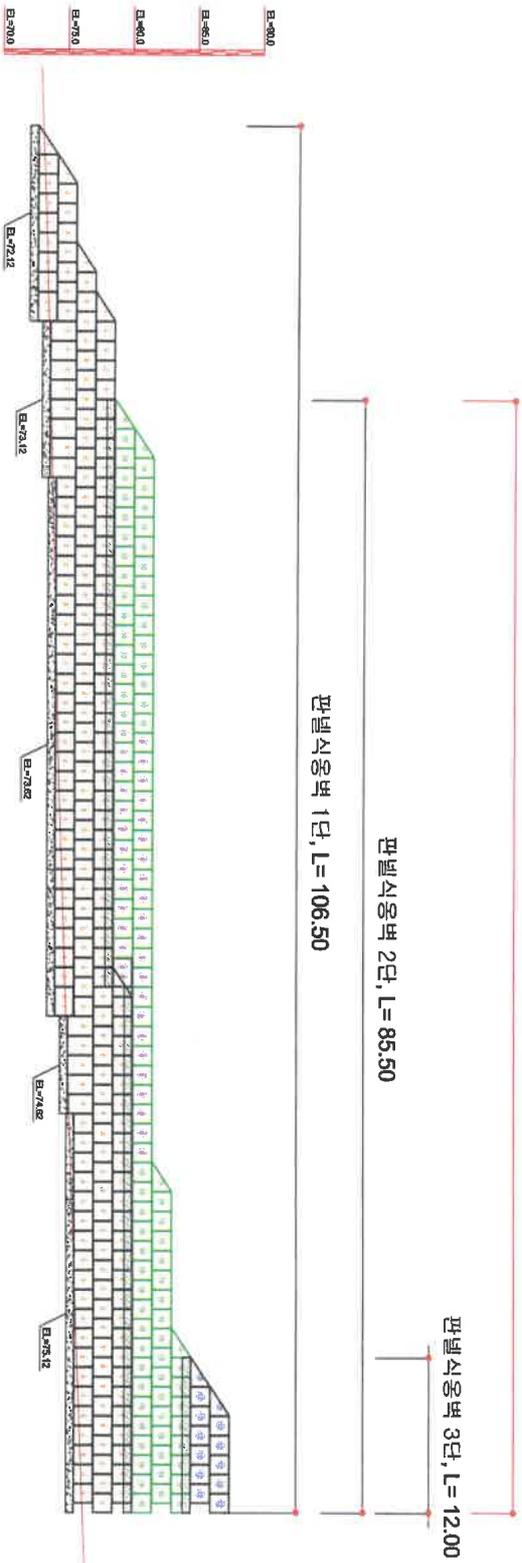
**NOTE**  
 작업대차의 지지력 확보를 위한 철판 및 받침목 설치 필요  
 소용 다짐장비 사전점검, 육안중 투입 및 작업현장 내 작업자  
 동제로 안전성중 확보필요

H=5m이상, L= 85.50

판넬식옹벽 2단, L= 85.50

판넬식옹벽 3단, L= 12.00

판넬식옹벽 1단, L= 106.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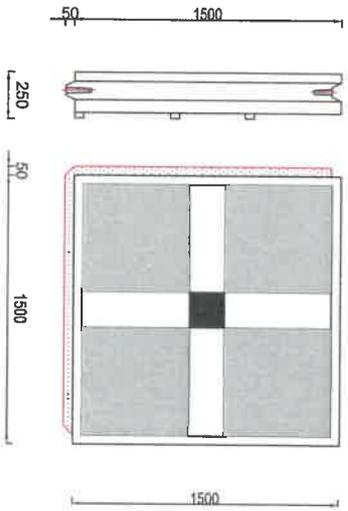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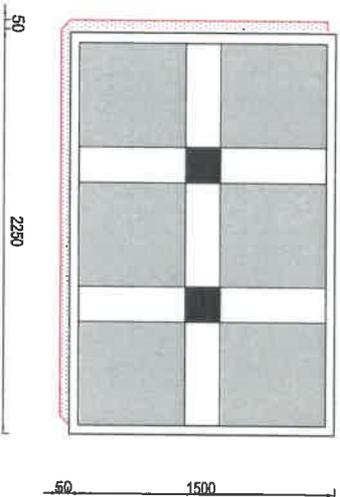


## 판넬식응벽 상세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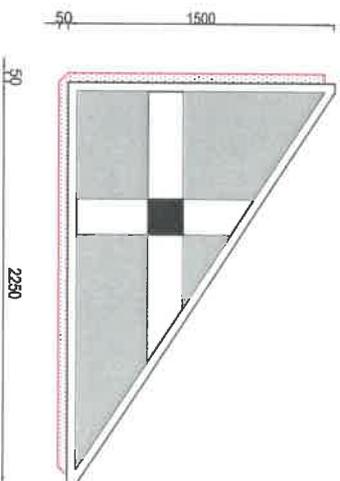
**(NOTE)**  
 작업지역의 지저역 확보를 위한 철근 및 받침부 설치 필요  
 소형 다짐 장비 사용 금지, 숙련공 투입 및 작업반경 내 작업자  
 통제로 안전성을 확보함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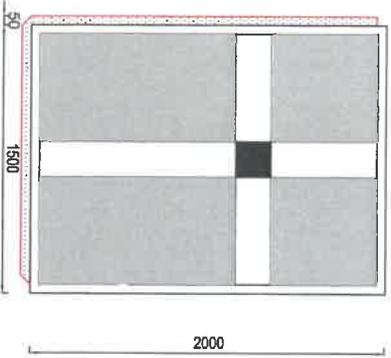
일반형 패널



대형 패널 "A"



삼각형 패널



대형 패널 "C"

<b>의정부공로프로젝트 금융투자(주)</b> <b>(주) 케이이엘지</b>		사업명 백운 지구외 도로(의정부2) 확포장공사	시설/공구 건설분야	도목 건설단계	실시상계 계약번호	2023.12 2023.03	설계모형(주) 케이이엘지 설계주용(주) 동화엔지니어링 기장 내용	간결수 과감해당지	공종별 배치인 분야별해당지	인건아 설계자	위치정보 축척 도면번호	NONE C0050206-009	도면명 판넬식응벽 상세도 (2)	작성표준 4.009	GED-01-104
--	--	------------------------------	---------------	------------	--------------	--------------------	---	--------------	----------------------	------------	--------------------	----------------------	----------------------	---------------	------------











설계자		심사자		팀장		과장		2023년 12월 일
-----	--	-----	--	----	--	----	--	-------------

백운로 지구 외도로 (의일로 2)  
절토부 판넬식 옹벽 안전점검 설계내역

용역개요 :

위 치 : 의왕시

1. 정기안전점검 1식
2. 초기점검 1식

총 용역비 : 일금삼천팔백이십칠만구천사백팔십이원정

(₩38,279,482)

# 일 위 대 가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비 고
				단 가	금액	단 가	금액	단 가	금액	단 가	금액	
NO.1호표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1. 정기안전점검		1	식	15,203,423	15,203,423					15,203,423	15,203,423	
2. 초기점검		1	식	11,587,530	11,587,530					11,587,530	11,587,530	
3. 추가조사비	외관조사망도작성	1	식	1,520,342	1,520,342					1,520,342	1,520,342	
4. 구조해석		1	식	3,955,630	3,955,630			3,955,630	3,955,630			
소 계					32,266,925							
제 경 비					4,351,193							
기 술 료		20%			1,661,364							
소 계					38,279,482							



산출 근거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비고
<p>산근 #2 외관조사망도 1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초기점검 기본대가를 산정</li> <li>-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26 1호 적용</li> <li>- 산정한 대가의 10% 적용</li> </ul> <p>(1) 절토부 판넬식용벽(L = 208.50 m)  외관조사망도작성 (정밀안전점검 기본대가 × 10%) = 15,203,423 × 0.1 = 1,520,342</p>			1,520,342	1,520,342	

산출근거

산단 #3 구조해석 1식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26 적용
- 별표26 10호의 구조해석 기준인원수 적용

별표26 - 10. 구조 지반 수리해석

구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9호)			비고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8)옹벽				
1. 콘크리트 옹벽	개소	1	7	
2. 보강토 옹벽	개소	1	10	
3. 절토부 옹벽	개소	1	14	
4. 석축 및 개비온 옹벽	개소	1	5	
(1) 절토부 판넬식옹벽(L = 208.50 m)				
가. 직접인건비				
$\text{고급기술자} : 14 \times 1\text{개소} \times 282,545 = 3,955,630$				
$\text{나.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 \text{경비} : 3,955,630 \times 110\% = 4,351,193$				
$\text{다. 기술로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text{경비} : 8,306,823 \times 20\% = 1,661,364$				
<b>계</b>				
			<b>3,955,630</b>	
			<b>4,351,193</b>	
			<b>1,661,364</b>	
			<b>6,012,557</b>	
			<b>3,955,630</b>	
			<b>9,968,187</b>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비고